

정 관

주식회사 센트랄모텍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센트랄모텍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CENTRAL MOTEK(약호 MOTEK) 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 부품, 용품의 제조 및 임가공 판매업
2. 금형, 치공구, 기계의 수리 및 임가공 판매업
3. 부동산 임대업
4. 신재생 에너지 사업
5. 위 사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울산광역시 내에 둔다. 단, 이사회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tr.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광고한다.

제 2 장 주식 및 주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만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 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으로 8종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 매수권 선택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 상장 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1항이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결의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위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

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 3 (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0조의 4 (신주의 배당 기산일)

본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1조의 명의 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수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십

역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 (모집 이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십 역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모집 이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8조 (소집시기)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0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3. 본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본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제30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안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의 보선)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일명,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위원회)

1.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내부거래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

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4조2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45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7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8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2 (중간배당)

1.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 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50조 (세칙내규)

본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실행한다.

제51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며,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2조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 영업일은 회사 설립일인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1996 년 08 월 14 일 1차 개정

1996 년 11 월 08 일 2차 개정

1997 년 03 월 31 일 3차 개정

2003 년 03 월 25 일 4차 개정
(이사3인 이상 ⇒ 이사1인 이상)

2003 년 06 월 10 일 5차 개정

(주식회사 세주 ⇒ 주식회사 센트랄모텍)

2003 년 12 월 30 일 6차 개정
(발행할 주식의 총수 4만주 =>50만주)

2008 년 3 월 20 일 7차 개정
(주식 및 주권의 종류 3종 => 7종)
(명의개서 단서조항 상법 제335조)

2010 년 3 월 31 일 8차 개정
(제2조 목적 -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가)
(제10조 명의개서 - 단서조항 변경)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 소집과 통지
- 제목 및 내용변경)

2010 년 7 월 14 일 9차 개정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만주 =>100만주)
(제38조 이익배당 => 중간배당 추가)

2011 년 03 월 31 일 10차 개정
(제16조 소집일시 일부변경)
(제22조 이사수 1명 => 3명)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일부변경)
(제30조 대표이사 => 업무담당이사의 선임으로 제목변경, 집행임원 조항 신설)
(제31조 업무집행 일부변경)
(제34조 보수와 퇴직금 일부변경)
(제38조 이익배당 2항 변경)

2012 년 11 월 28 일 11차 개정
(제 1장 제3조 본점 소재지 변경)
(제 5장 제34조 보수와 퇴직금 변경)

2014 년 03 월 21 일 12차 개정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변경)
제8조의 1 (신주인수권 신설)
제25조(이사의 임기 변경)

2018년 04월 01일 13차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표준 정관으로 개정

2018년 04월 25일 14차 개정
제6조 (일주의 금액) 5,000원 → 500원